2025년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계획 공고

2025. 10.

교 육 부

Ⅰ 표창 개요

□ 목적

◦ 재외국민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국내·외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을 기리고, 사기 진작 및 성과 제고

◦ 재외한국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높인 학생에 대한 격려 및 성취동기 부여

□ 표창분야 및 대상

[1] **재외국민교육 유공 표창**

◦ **재외국민교육**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및** 재산이나 재능 **기부자·후원자**

□ 훈격: 교육부장관 표창

□ 추진 절차

포상대상자 추천 및 접수	⇨	서류 검토 및 공개검증 실시	⇨	공적심사 및 제한 여부 확인	⇨	표창대상자 확정	⇨	표창수여 (12월 중)

※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표창 수여는 학교 및 해당 기관에서 전수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분야 및 인원

표창 분야	대 상	추천기관	계
1 재외국민교육 유공 표창	공무원 및 국내.외 일반인	재외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재외공관, 시도교육청, 대학, 관련기관(단체) 등	8
합 계			8

※ 분야별 표창 인원은 추천 상황 및 공적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분야별 추천 대상

① **재외국민교육 유공 표창**: 재외국민교육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및 재산이나 재능 기부·후원자

- 재외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외국민교육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재외국민 교육을 위하여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거나, 지속적인 재능 기부, 학생 선도, 후원 등으로 재외교육 발전에 귀감이 되는 자

□ 후보자 추천 방법

◦ (**기관추천**) 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정도, 기서훈, 수공 기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 추천

기관 추천	⇨	각 기관	⇨	재외교육지원담당관	⇨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의 후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로 추천		공개검증 및 추천 제한 여부 확인		공적심사 및 표창 대상자 확정

※ 표창후보자 공개검증은 각 기관 추천 접수 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 예정

◦ (추천 인원) 1명 이내

□ 표창 기준

◦ (**수공 기간**)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거 규정된 기간 이상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

< 대상자별 수공 기간 > **※추천기준일: 2025. 12. 1.**

구분	수공기간	비고
공무원	3년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수공기간에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일반인	2년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퇴직자	2년	해당 분야 공적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일 기준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 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3. 12. 1. ~ '25. 11. 30. 기간 내에 장관 표창 수여자(예정 포함) 추천 제외

◦ (**결격사유**)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거 규정된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불가

□ 추천 제한

공통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재표창 금지 기간)에 교육부 장관표창 또는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다만, 장관상, 퇴직자 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공무원

※ 공무직원,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 주요비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제한 적용을 제외함

일반인

◦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
②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Ⅲ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 '25. 10. 31.(금) 16:00

※ 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제출

◦ 제출처 : jumisong423@gmail.com

※ 문의 213-386-3112,

□ 추천 시 구비서류

서식명	서식 번호	비 고
1. 공적조서	서식1	대상자 전원 작성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2	대상자 전원 작성

□ 제출 시 유의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서류는 개인정보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서류 처리 시에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에 철저

<서식 1>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서식 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교육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 4> 추천대상자 명부에 내역 작성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일반인만 해당)
○ 정부포상 또는 교육부장관표창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인 포상건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2. 공적심사 등 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장관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기록부 : 영구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2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 귀중